"변화를 선도하는 강남, 희망을 선사하는 강남"

강남구

수 신 서울산업진흥원대표이사(인프라운영팀장)

(경유)

제 목 도로불법점용 원상회복명령 미이행 이행강제금 계고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기관의 불법도로점용행위에 대하여 원상회복명령(건설관리과-7596호, 2017.3.22. / 건설관리과-8664호, 2017.3.30.)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이행하고 있지 않아 도로법상 위법상태가 지속되고 도로(보도) 이용자의 보행권이 침해되고 있는바,

3. 이에 대하여「도로법」제100조에 의거하여 이행강제금 부과 계고를 하오니 2017.4.28.(금)限 원상회복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한내 원상회복하지 않을 경우「도로법 시행령」[별표 5] 제3호에 의거 100만원의 이행강제금 부과처분을 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4. 본 처분에 이의가 있을 경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에 의거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또는 처분이 있는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끝.

강남구청장

주무관	조현근	건설행정팀장	이갑렬	건설관리과장	전결 04/18 심인식

협조자

시행 건설관리과-10556 (2017.04.18.) 접수 SETEC팀-595 (2017.04.19.)

우 06090 서울 강남구 학동로 426 / www.gangnam.go.kr

전화 02-3423-6515 /전송 02-3423-8851 / / 비공개(5)